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(회원종목단체 규정)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7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</b>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부회장</u>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&lt;개정 2016. 4. 28.&gt;</p> <p>③~⑩ “생략”</p>	<p><b>제7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</b></p> <p>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(<u>단, 회원종목단체 임원인 부회장은 제외한다</u>)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 &lt;개정 2016. 4. 28., <u>2026. 00. 00.</u>&gt;</p> <p>③~⑩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■ 동조 제6항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대의원(대리인)으로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</p> <p>*「정관」제 14 조 제 3 항 반영</p>
<p><b>제8조(총회의 소집)</b>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1. 10. 6.&gt;</p> <p>1.~4. “생략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~⑥ “생략”</p>	<p><b>제8조(총회의 소집)</b></p> <p>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21. 10. 6., <u>2026. 00. 00.</u>&gt;</p> <p>1.~4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<u>5. 회장의 보궐선거 당선이 확정된 때(단, 임기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기총회가 예정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)</u></p> <p>③~⑥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■ 조속한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시총회 개최사유에 ‘회장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시’ 추가</p> <p>*「정관」제 17 조 제 2 항 개정안 반영</p>
<p><b>제21조(회장의 직무대행)</b>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<u>6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. &lt;신설 2017.8.7.&gt; &lt;개정 2021. 12. 27.&gt;</p> <p>③ “생략”</p> <p>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궐위일로부터 <u>6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</p>	<p><b>제21조(회장의 직무대행)</b></p> <p>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<u>9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. &lt;신설 2017.8.7.&gt; &lt;개정 2021. 12. 27., <u>2026. 00. 00.</u>&gt;</p> <p>③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궐위일로부터 <u>90일</u>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</p>	<p>■ 회장 궐위 또는 사고 후 회장선출 기간 확대</p> <p>*「정관」 제 12 조 제 1 항 개정안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여야 한다. &lt;개정 2017. 3. 23., 2018. 4. 25., 개정 2024. 12. 26.&gt;</p> <p>⑤ “생략”</p>	<p>여야 한다. &lt;개정 2017. 3. 23., 2018. 4. 25., <del>개정</del> 2024. 12. 26., 2026. 00. 00.&gt;</p> <p>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
<p><b>제25조(임원의 임기)</b> ①~⑤ “생략”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25조(임원의 임기)</b> ①~⑤ “현행과 같음” ⑥ 제1항,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회장이 선출된 경우, 이사의 임기(회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신설 2026. 00. 00.&gt; 1. 기존 이사 : 새로운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직근 총회일 전일까지 2. 새로 선임된 이사 :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총회일(단,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, 회장이 선임을 한 날)로부터 다음 회장 당선 이후 첫 번째 총회일 전일까지</p>	<p>■ 재선거, 보궐선거로 회장 선출된 경우 이사 임기 규정 *「정관」 제 29 조 제 12 항 개정안 반영</p>
<p><b>제27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</b> ①~③ “생략”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27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</b> ①~③ “생략” ④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(또는 후보자등록)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 &lt;신설 2026. 00. 00.&gt;</p>	<p>■ 현직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(예비)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. *「정관」 제 31 조 제 3 항 반영</p>
<p><b>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</b> ①~③ “생략” ④ 위원회 <u>위원</u>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&lt;개정 2021. 10. 6.&gt; ⑤ “생략”</p>	<p><b>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</b> ①~③ “현행과 같음” ④ 위원회 위원(<u>선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</u>)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&lt;개정 2021. 10. 6., 2026. 00. 00.&gt; 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■ 선수위원회 위원의 다른 위원회 위원 겸임 허용 *「정관」 제 45 조 제 4 항 반영</p>
<p><b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b> ① “생략”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</u>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<u>한</u></p>	<p><b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b> ① “현행과 같음” 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</u>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<u>할 수</u></p>	<p>■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위원 구성 요건 명시 일원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경우</u>,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7. 3. 23., 2019. 5. 29., 2019. 12. 20.&gt;</p> <p><u>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</u>  <u>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<u>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<u>4.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          ③~④ “생략”</p>	<p><u>있으며, 이 경우</u>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. &lt;개정 2017. 3. 23., 2019. 5. 29., 2019. 12. 20., <b>2026. 00. 00.</b>&gt;</p> <p><u>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</u>  <u>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<u>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<u>4.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           ③~④ “<u>현행과 같음</u>”</p>	<p>화로 관련 내용 삭제            *「정관」 제 43 조 제 2 항, 「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」 개정안 참고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부 칙(2026. 00. 00.)</u> 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  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</p>	<p>■시행일 및 경과 조치 명시</p>